

## 가스보일러 시공시 하자담보에 관한 법령 및 규정

### ◆ 건설산업기본법 관련조항

#### 제28조 (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)

-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·철근콘크리트구조·철골구조·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,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, 기타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.[가스보일러 하자담보기간: 1년]
- ②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.
- 1.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
  - 2.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
  - 3.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
- ③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법령(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)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#### 제44조 (건설업자의 손해배상 책임)

- ①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- ② 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- ④ 수급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### ◆ 도시가스공급규정 관련조항

#### ● 서울시 공급규정

#### 제13조 (시공기록 교부 및 연소기 등의 연결)

- ① 제12조제1항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사용시설(온수보일러 등 그 부대시설 포함)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시공자는 그 시공기록 및 도면(온수보일러 설치공사의 경우 온수보일러 설치확인서 및 사진)을 작성하여 당사에 교부하여야 하며,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제44조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수요자에게 하여야 합니다.
- ② 가스사용기기를 설치(교체를 포함) 한 후 처음으로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당사에 공급을 요청하여야 하며, 당사는 점검을 실시하여 시공상태가 제규정에 적합하며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공급 요청일로부터 1일이내에 가스를 공급합니다.

#### ● 경기도 공급규정

#### 제15조(시공기록 교부 및 연소기 등의 연결)

- 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스사용시설공사를 완료한 시공자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 규칙 제20조의 제반규정에 의한 시공기록 및 도면(온수보일러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설치확인서 및 사진)을 작성하고 그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공급전안전점검이 끝난 후 가스연소기기를 설치(가스소비량의 변동을 수반하는 기종으로 연소기를 교체한 종전의 수요자를 포함한다)하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를 받은 회사는 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.
- ③ 가스보일러 등(온수기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)을 설치한 자가 관밀연결공사를 시행코자할 경우 제1항의 시공기록을 회사에 제출하고, 행보증증권 및 손해배상책임보험증권등을 수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, 회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전안전점검시 시공자가 하자이행보증증권 등을 수요자에게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## 가스보일러시공자 보험가입의무화 제도시행

◆ 도시가스사업법 개정(2003. 5. 27 법률 제6886호)으로 가스보일러 시공자에 대한 보험가입 이의무화됨.

▶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(보험가입) ①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사용하는 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1. - 생략

2. - 생략

3.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공자

※ 보험가입 위반자 과태료 500만원 부과

▶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②법 제43조1항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시공자는 온수보일러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를 하는 자로 한다.

※ 도시가스사업자가 온수보일러 및 부대시설에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경우 시공자의 보험가입여부확인에 관한 사항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함.(별표11)

※ 시행규칙 제64조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는 3억원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.

◆ 기본보상한도 : 대인배상 사망 1인당 8천만원 /재산피해 3억원 범위내 / 부상1인당 1천5백만원

▶ 보험기간 : 1년

▶ 보험기간 연장 : 휴업, 폐업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보험증권만료일로부터 (12개월 연장)

(보험료 미납 등 보험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 된 경우는 제외 됨)

▶ 특별약관 :

- 가스시설시공 작업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혜택가능.

- 사업 양도 시에도 보험이 승계됨

제 1조 가스보일러설치·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 (부록 제 1호)	
제 2조 제 1호	
제 3조 제 2호	
제 4조 제 3호	
제 5조 제 4호	
제 6조 제 5호	
제 7조 제 6호	
제 8조 제 7호	
제 9조 제 8호	
제 10조 제 9호	
제 11조 제 10호	
제 12조 제 11호	
제 13조 제 12호	
제 14조 제 13호	
제 15조 제 14호	
제 16조 제 15호	
제 17조 제 16호	
제 18조 제 17호	
제 19조 제 18호	
제 20조 제 19호	
제 21조 제 20호	
제 22조 제 21호	
제 23조 제 22호	
제 24조 제 23호	
제 25조 제 24호	
제 26조 제 25호	
제 27조 제 26호	
제 28조 제 27호	
제 29조 제 28호	
제 30조 제 29호	
제 31조 제 30호	
제 32조 제 31호	
제 33조 제 32호	
제 34조 제 33호	
제 35조 제 34호	
제 36조 제 35호	
제 37조 제 36호	
제 38조 제 37호	
제 39조 제 38호	
제 40조 제 39호	
제 41조 제 40호	
제 42조 제 41호	
제 43조 제 42호	
제 44조 제 43호	
제 45조 제 44호	
제 46조 제 45호	
제 47조 제 46호	
제 48조 제 47호	
제 49조 제 48호	
제 50조 제 49호	
제 51조 제 50호	
제 52조 제 51호	
제 53조 제 52호	
제 54조 제 53호	
제 55조 제 54호	
제 56조 제 55호	
제 57조 제 56호	
제 58조 제 57호	
제 59조 제 58호	
제 60조 제 59호	
제 61조 제 60호	
제 62조 제 61호	
제 63조 제 62호	
제 64조 제 63호	
제 65조 제 64호	
제 66조 제 65호	
제 67조 제 66호	
제 68조 제 67호	
제 69조 제 68호	
제 70조 제 69호	
제 71조 제 70호	
제 72조 제 71호	
제 73조 제 72호	
제 74조 제 73호	
제 75조 제 74호	
제 76조 제 75호	
제 77조 제 76호	
제 78조 제 77호	
제 79조 제 78호	
제 80조 제 79호	
제 81조 제 80호	
제 82조 제 81호	
제 83조 제 82호	
제 84조 제 83호	
제 85조 제 84호	
제 86조 제 85호	
제 87조 제 86호	
제 88조 제 87호	
제 89조 제 88호	
제 90조 제 89호	
제 91조 제 90호	
제 92조 제 91호	
제 93조 제 92호	
제 94조 제 93호	
제 95조 제 94호	
제 96조 제 95호	
제 97조 제 96호	
제 98조 제 97호	
제 99조 제 98호	
제 100조 제 99호	
제 101조 제 100호	
제 102조 제 101호	
제 103조 제 102호	
제 104조 제 103호	
제 105조 제 104호	
제 106조 제 105호	
제 107조 제 106호	
제 108조 제 107호	
제 109조 제 108호	
제 110조 제 109호	
제 111조 제 110호	
제 112조 제 111호	
제 113조 제 112호	
제 114조 제 113호	
제 115조 제 114호	
제 116조 제 115호	
제 117조 제 116호	
제 118조 제 117호	
제 119조 제 118호	
제 120조 제 119호	
제 121조 제 120호	
제 122조 제 121호	
제 123조 제 122호	
제 124조 제 123호	
제 125조 제 124호	
제 126조 제 125호	
제 127조 제 126호	
제 128조 제 127호	
제 129조 제 128호	
제 130조 제 129호	
제 131조 제 130호	
제 132조 제 131호	
제 133조 제 132호	
제 134조 제 133호	
제 135조 제 134호	
제 136조 제 135호	
제 137조 제 136호	
제 138조 제 137호	
제 139조 제 138호	
제 140조 제 139호	
제 141조 제 140호	
제 142조 제 141호	
제 143조 제 142호	
제 144조 제 143호	
제 145조 제 144호	
제 146조 제 145호	
제 147조 제 146호	
제 148조 제 147호	
제 149조 제 148호	
제 150조 제 149호	
제 151조 제 150호	
제 152조 제 151호	
제 153조 제 152호	
제 154조 제 153호	
제 155조 제 154호	
제 156조 제 155호	
제 157조 제 156호	
제 158조 제 157호	
제 159조 제 158호	
제 160조 제 159호	
제 161조 제 160호	
제 162조 제 161호	
제 163조 제 162호	
제 164조 제 163호	
제 165조 제 164호	
제 166조 제 165호	
제 167조 제 166호	
제 168조 제 167호	
제 169조 제 168호	
제 170조 제 169호	
제 171조 제 170호	
제 172조 제 171호	
제 173조 제 172호	
제 174조 제 173호	
제 175조 제 174호	
제 176조 제 175호	
제 177조 제 176호	
제 178조 제 177호	
제 179조 제 178호	
제 180조 제 179호	
제 181조 제 180호	
제 182조 제 181호	
제 183조 제 182호	
제 184조 제 183호	
제 185조 제 184호	
제 186조 제 185호	
제 187조 제 186호	
제 188조 제 187호	
제 189조 제 188호	
제 190조 제 189호	
제 191조 제 190호	
제 192조 제 191호	
제 193조 제 192호	
제 194조 제 193호	
제 195조 제 194호	
제 196조 제 195호	
제 197조 제 196호	
제 198조 제 197호	
제 199조 제 198호	
제 200조 제 199호	
제 201조 제 200호	
제 202조 제 201호	
제 203조 제 202호	
제 204조 제 203호	
제 205조 제 204호	
제 206조 제 205호	
제 207조 제 206호	
제 208조 제 207호	
제 209조 제 208호	
제 210조 제 209호	
제 211조 제 210호	
제 212조 제 211호	
제 213조 제 212호	
제 214조 제 213호	
제 215조 제 214호	
제 216조 제 215호	
제 217조 제 216호	
제 218조 제 217호	
제 219조 제 218호	
제 220조 제 219호	
제 221조 제 220호	
제 222조 제 221호	
제 223조 제 222호	
제 224조 제 223호	
제 225조 제 224호	
제 226조 제 225호	
제 227조 제 226호	
제 228조 제 227호	
제 229조 제 228호	
제 230조 제 229호	
제 231조 제 230호	
제 232조 제 231호	
제 233조 제 232호	
제 234조 제 233호	
제 235조 제 234호	
제 236조 제 235호	
제 237조 제 236호	
제 238조 제 237호	
제 239조 제 238호	
제 240조 제 239호	
제 241조 제 240호	
제 242조 제 241호	
제 243조 제 242호	
제 244조 제 243호	
제 245조 제 244호	
제 246조 제 245호	
제 247조 제 246호	
제 248조 제 247호	
제 249조 제 248호	
제 250조 제 249호	
제 251조 제 250호	
제 252조 제 251호	
제 253조 제 252호	
제 254조 제 253호	
제 255조 제 254호	
제 256조 제 255호	
제 257조 제 256호	
제 258조 제 257호	
제 259조 제 258호	
제 260조 제 259호	
제 261조 제 260호	
제 262조 제 261호	
제 263조 제 262호	
제 264조 제 263호	
제 265조 제 264호	
제 266조 제 265호	
제 267조 제 266호	
제 268조 제 267호	
제 269조 제 268호	
제 270조 제 269호	
제 271조 제 270호	
제 272조 제 271호	
제 273조 제 272호	
제 274조 제 273호	
제 275조 제 274호	
제 276조 제 275호	
제 277조 제 276호	
제 278조 제 277호	
제 279조 제 278호	
제 280조 제 279호	
제 281조 제 280호	
제 282조 제 281호	
제 283조 제 282호	
제 284조 제 283호	
제 285조 제 284호	
제 286조 제 285호	
제 287조 제 286호	
제 288조 제 287호	
제 289조 제 288호	
제 290조 제 289호	
제 291조 제 290호	
제 292조 제 291호	
제 293조 제 292호	
제 294조 제 293호	
제 295조 제 294호	
제 296조 제 295호	
제 297조 제 296호	
제 298조 제 297호	
제 299조 제 298호	
제 300조 제 299호	
제 301조 제 300호	
제 302조 제 301호	
제 303조 제 302호	
제 304조 제 303호	
제 305조 제 304호	
제 306조 제 305호	
제 307조 제 306호	
제 308조 제 307호	
제 309조 제 308호	
제 310조 제 309호	
제 311조 제 310호	
제 312조 제 311호	
제 313조 제 312호	
제 314조 제 313호	
제 315조 제 314호	
제 316조 제 315호	
제 317조 제 316호	
제 318조 제 317호	
제 319조 제 318호	
제 320조 제 319호	
제 321조 제 320호	
제 322조 제 321호	
제 323조 제 322호	
제 324조 제 323호	
제 325조 제 324호	
제 326조 제 325호	
제 327조 제 326호	
제 328조 제 327호	
제 329조 제 328호	
제 330조 제 329호	
제 331조 제 330호	
제 332조 제 331호	
제 333조 제 332호	
제 334조 제 333호	
제 335조 제 334호	
제 336조 제 335호	
제 337조 제 336호	
제 338조 제 337호	
제 339조 제 338호	
제 340조 제 339호	
제 341조 제 340호	
제 342조 제 341호	
제 343조 제 342호	
제 344조 제 343호	
제 345조 제 344호	
제 346조 제 345호	
제 347조 제 346호	
제 348조 제 347호	
제 349조 제 348호	
제 350조 제 349호	
제 351조 제 350호	
제 352조 제 351호	
제 353조 제 352호	
제 354조 제 353호	
제 355조 제 354호	
제 356조 제 355호	
제 357조 제 356호	
제 358조 제 357호	
제 359조 제 358호	
제 360조 제 359호	
제 361조 제 360호	
제 362조 제 361호	
제 363조 제 362호	
제 364조 제 363호	
제 365조 제 364호	
제 366조 제 365호	
제 367조 제 366호	
제 368조 제 367호	
제 369조 제 368호	
제 370조 제 369호	
제 371조 제 370호	
제 372조 제 371호	
제 373조 제 372호	
제 374조 제 373호	
제 375조 제 374호	
제 376조 제 375호	
제 377조 제 376호	
제 378조 제 377호	
제 379조 제 378호	
제 380조 제 379호	
제 381조 제 380호	
제 382조 제 381호	
제 383조 제 382호	
제 384조 제 383호	
제 385조 제 384호	
제 386조 제 385호	
제 387조 제 386호	
제 388조 제 387호	
제 389조 제 388호	
제 390조 제 389호	
제 391조 제 390호	
제 392조 제 391호	
제 393조 제 392호	
제 394조 제 393호	
제 395조 제 394호	
제 396조 제 395호	
제 397조 제 396호	
제 398조 제 397호	
제 399조 제 398호	
제 400조 제 399호	
제 401조 제 400호	
제 402조 제 401호	
제 403조 제 402호	
제 404조 제 403호	
제 405조 제 404호	
제 406조 제 405호	
제 407조 제 406호	
제 408조 제 407호	
제 409조 제 408호	
제 410조 제 409호	
제 411조 제 410호	
제 412조 제 411호	
제 413조 제 412호	
제 414조 제 413호	
제 415조 제 414호	
제 416조 제 415호	
제 417조 제 416호	
제 418조 제 417호	
제 419조 제 418호	
제 420조 제 419호	
제 421조 제 420호	
제 422조 제 421호	
제 423조 제 422호	
제 424조 제 423호	
제 425조 제 424호	
제 426조 제 425호	
제 427조 제 426호	
제 428조 제 427호	
제 429조 제 428호	
제 430조 제 429호	
제 431조 제 430호	
제 432조 제 431호	
제 433조 제 432호	
제 434조 제 433호	
제 435조 제 434호	
제 436조 제 435호	
제 437조 제 436호	
제 438조 제 437호	
제 439조 제 438호	
제 440조 제 439호	
제 441조 제 440호	
제 442조 제 441호	
제 443조 제 442호	
제 444조 제 443호	
제 445조 제 444호	
제 446조 제 445호	
제 447조 제 446호	
제 448조 제 447호	
제 449조 제 448호	
제 450조 제 449호	
제 451조 제 450호	
제 452조 제 451호	
제 453조 제 452호	
제 454조 제 453호	
제 455조 제 454호	
제 456조 제 455호	

## 가스보일러 오인연결 방지 개선방안

가스보일러 오인 연결에 따른 가스공급 중단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선방안을 알려드리오니,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1. 배경

- 가스보일러 설치 시 가스관과 급수관을 잘못 연결하여 가스공급이 중단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함.

### 2. 현실태 및 문제점

- 가스관과 급수관을 구분 표시하기 위하여 스티커 또는 Tag를 부착하여 제품을 출하하고 있으나 쉽게 떨어지거나 제거됨.
- 협소한 장소에 가스보일러 설치 시 표시사항이 훼손되었을 경우 가스관과 급수관의 오인 연결 가능성 이 상존함.

### 3. 개선방안

#### ■ 가스안전공사 추진사항

##### ○ KGS Code 개정 추진

가스보일러 바닥면 배관연결부 주위에 “가스”, “급수” 등을 양각 또는 음각 글자로 표시하고 가스 관 전용마개를 황색을 설치토록 표시방법. \*관련 Code: KGS AB131(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기준) 및 KGS AB133(자연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기준)

##### ○ 가스보일러 제조사 간담회 개최

표시방법 보완에 대하여 제조사 의견을 수렴하고 최정(안) 확정.

#### ■ 도시가스 추진사항

##### ○ 공급전 안전점검 기준 개정

가스관 및 급수관의 연결 상태를 철저히 확인토록 공급전 안전점검 세부 기준 마련(도시가스사 내규 개정)

##### ○ 공급전 안전점검 철저 및 시공자 감독 강화

가스관과 급수관을 잘못 연결한 상태에서 가스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급전 안전점검을 확실히 하고 시공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

#### ■ 시공 관련 협회 추진사항

##### ○ 법정교육 철저 및 회원사 홍보 실시

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5조에 따른 난방시공업 법정교육(주기 3년)시 가스관과 급수관을 오인 연결 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교육 실시

회원사 정기 Workshop 및 원간지에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

##### ○ 연소기 전용 금속플렉시블 호스 사용 의무화 안내

2011년 4월부터 연소기용 배관용 금속플렉시블 호스를 구분 제조토록 의무화 되므로 가스보일러 시공 시 내열성이 강화된 제품을 사용토록 회원사에 안내.